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0. 06.

환경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
(‘20.3.31 공포, ’20.10.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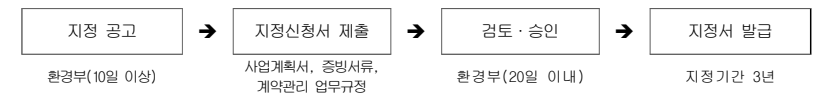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대기 1~2종 사업장, 수질 1~2종 사업장 등으로 지정

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지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대상 기관* 규정
 - *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협회 등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기준(별표 1), 지정취소 기준(별표 1의2) 규정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절차 규정



- 측정대행 전문 교육·훈련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업무 규정

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한 기준* 명시(안 제13조의4 신설)

* 측정 조작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업무 수행시 국가기술자격 1년간 정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5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3조의2) 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3조”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및 제31조제2항”을 “전단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토양관련 전문기관”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

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1종부터 2종까지의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2종까지의 사업장
3. 그 밖에 소음·진동 및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4. 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측정대행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훈련
2. 그 밖에 환경분야 측정기술 개발 및 측정기술의 국제교류 등 측정대행 업무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⑦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⑧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3

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4호 및”을 “제4호, 제4호의2 및”으로 한다.

제17조의3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교육,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가. 측정대행계약의 공고에 관한 사항
 - 나. 측정대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다.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3.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별지 [별표 1의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3조의3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6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

계약관리기관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1호	지정 취소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3)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5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1종부터 2종까지의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2종까지의 사업장 3. 그 밖에 소음·진동 및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신설>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4. 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측정대행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훈련

2. 그 밖에 환경분야 측정기술 개발 및 측정기술의 국제교류 등 측정대행 업무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⑦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⑧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

<신 설>

제13조의2(시험·검사기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1. 2. (생략)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5. 6. (생략)

7.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9.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

다.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의5(시험·검사기관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

5. 6. (현행과 같음)

7.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본문-----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전단-----

9. -----

항,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1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u>토양관련 전문기관</u> 10의2. · 11. (생략) 12. 「<u>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u>」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u>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u> 13. (생략) ② ~ ④ (생략)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u>별표 1과</u> 같다. ② (생략)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u>별표 2와</u> 같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 <u>전단 및 제31조제2항</u>----- ----- 10. ----- ----- <u>토양관련전문기관</u> 10의2. · 11. (현행과 같음) 12. 「<u>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u>」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u>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u>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① ----- ----- <u>별표 2와</u>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① ----- ----- ----- ----- ----- <u>별표 3과</u> -----. ----- -----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u>별표 2</u>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 ⑦ ~ ⑨ (생략)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u>제4호</u>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별표 3</u>-----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 ----- ----- <u>제4호, 제4호의2</u> 및 ----- ----- ----- ----- ----- ----- -----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4조 및 <u>별표 1</u> 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 ----- <u>별표 2</u> ----- ----- ----- ----- ----- ----- <u>해야</u>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 3</u> 과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 4와</u> -----.